

검토보고서

안건명	부서명	페이지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세무1과	1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세무1과	3

(2017. 6. 13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유준상]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1. 안건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5월 24일(수)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7년 5월 26일(금)

4. 관계법규

-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5. 개정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규정을 납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하고 「지방세기본법」은 전부개정(법률 14474호, 2016. 12. 27. 공포, 2017. 3. 28. 시행)됨에 따라,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」로 이관하고, 이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.

6. 주요 개정 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법령과의 관계, 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 등을 규정함
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)
- 나.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)
- 다.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, 교부금전의 예탁,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)
- 라.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정함(안 제8조)

7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지방세 징수규정을 납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하고 「지방세기본법」은 전부개정됨에 따라,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」로 이관하고,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「마포구 구세 기본조례」 10개 조항 중 2개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항을 「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」로 이관하고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에 알맞도록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제·개정에 따라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1. 안건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5월 24일(수)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7년 5월 26일(금)

4. 관계법규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5. 개정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에 대한 제한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201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.

6. 주요 개정 내용

- 가.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의 재산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85%의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
(안 제19조의2)
- 나.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(부칙 안 제3조)
 - 종전 2017.12.31. ⇒ 변경 2019.12.31.

7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에 대한 제한 적용규정을 신설하여,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201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.

- 검토의견으로는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85%의 감면율만 적용되게 되어 구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조례로 적용여부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필요함

조례로 적용 시기 등을 정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면제의 경우에는 15%를 납부하여야 함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